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응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543

발의연월일: 2021. 9. 14.

발 의 자:조응천·한준호·김철민

이상헌 · 송기헌 · 위성곤

김민기 • 문진석 • 우원식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운임수입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, 이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운임수입의 배분, 즉 연락운임 정산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와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입니다.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로 최종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운송기관들의 재무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연락운임 수입의 배분은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 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고, 당사자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기관이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(안 제34조 제3항)

법률 제 호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철도사업자"를 "철도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철도사업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는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는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날부터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하는 우임수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

행 이후 운임수입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4조(연락운송) ① 도시철도운 제34조(연락운송) ① ----영자가 다른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8 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연계 -----철도사업자(이하 이 조 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 노선의 에서 "철도사업자"라 한다)----연결, 도시철도시설 운영의 분 담, 운임수입의 배분,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 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 사업자는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운 임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 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완료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④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 <신 설> 사업자는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날부터 운임수입

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운임 수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배분하여야 한다.